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79 발의연월일: 2021. 11. 8.

발 의 자:김승남・김원이・송갑석

송옥주 • 신정훈 • 양정숙

윤재갑 • 이개호 • 이수진॥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올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 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남.

수입 반려동물의 70%인 1만2천3백 마리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소비자들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소비자보호원의 애완동물 폐사 또는 질병 관련 438건의 접수현황이 있을 만큼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나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폐사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생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허가요건과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 동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물생산업 시설 허가기준이 없어 수입지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수입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수입업자"라 한다)는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수입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수입업자"라 한다)는 동물
	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7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
	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